

의안번호	2216815
의 퇴 인	김용만의원
회 답 일	2026. 3. 11.
추계번호	26C073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2조(아동보호구역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등)	다음을 아동보호구역 지정 대상으로 추가함 - 제52조제1항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아동일시보호시설,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32조(아동보호구역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아동보호구역 추가 지정(안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6호)

- 개정안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및 지역아동센터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법 제32조제3항1)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

1) 제32조(아동보호구역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도시공원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 기시설(이하 “CCTV”라 함)을 설치하는 등 재정소요 발생을 예상할 수 있음
- 다만,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및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대부분 CCTV 설치가 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아동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직접적인 비용 발생이 크지 않을 수 있으나, 개정안 중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 그 종류와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향후 지정여부나 현재 CCTV 설치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임
 - － 참고로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현황과 현재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은 다음과 같음

【표 1】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현황('26년 1월 기준)

지자체 소관				교육청 소관	
시설명	개소수	시설명	개소수	시설명	개소수
주택단지	45,753	대규모점포	88	학교	6,931
아동복지시설	428	하천	85	유치원	7,319
육아종합 지원센터	128	어린이집	7,089	유아교육 진흥원	47
공공도서관	53	놀이제공 영업소	1,845	학원	104
자연휴양림	140	도로휴게시설	33	합계	14,401(17%)
도시공원	12,369	박물관	101		
식품접객업소	1,353	목욕장업소	83		
주상복합	345	야영장	183		
종교시설	416	소계	9,507		
소계	60,985				
합계	70,523(83%)				

총계 84,924개소 [실외 78,453(92.4%), 실내 6,471(7.6%)]

자료: 행정안전부

3.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4.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 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표 2】 아동보호구역 지정 현황('25년 10월 기준)

시도	계	시설별(개소)				CCTV 설치 대수
		도시공원 (1호)	어린이집 (2호)	초등학교 특수학교(3호)	유치원 (4호)	
서울	297	143	16	131	7	1,209
부산	200	7	52	123	18	5,393
대구	27	19	2	6	—	171
인천	14	—	5	6	3	14
대전	147	66	32	23	26	147
경기	67	9	7	51	—	1,760
강원	33	31	1	1	—	56
전북	104	35	19	34	16	245
전남	114	21	38	52	3	508
경북	25	25	—	—	—	138
경남	43	20	—	23	—	206
계	1,071	376	172	450	73	9,847

자료: 보건복지부

- 따라서 개정안은 재정수반요인의 주요 사항을 현 단계에서 파악하기 어려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이제정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제정	02-6788-3739	jejeong2@assembly.go.kr